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방위산업발전및지원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자금융자 신청절차 등)”을 “(금융지원 절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12조”를 “법 제12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방산업체 등
2.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위하여 연구개발, 생산시설 구축 또는 자체투자 등을 추진하는 기업
3. 그 밖에 방위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투자촉진에 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이 인정하는 기업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자금융자 신청절차 등)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 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.	제16조(금융지원 절차 등) ① --- ----- 법 제12조제1항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
	1.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방산업체 등
	2.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위하 여 연구개발, 생산시설 구축 또는 자체투자 등을 추진하는 기업
	3. 그 밖에 방위산업의 성장기 반 조성 및 투자촉진에 필요 하다고 방위사업청이 인정하 는 기업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2) 748 - 5674